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4

발의연월일: 2020. 6. 16.

발 의 자: 박용진 · 이소영 · 정성호

박 정ㆍ이학영ㆍ용혜인

기동민 · 민병덕 · 송옥주

전용기 · 정춘숙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 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2016. 6. 30.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.

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(안 제60조제1항제5호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0조제1항제5호 중 "第8號"를 "제7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	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
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자) ①
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	
동을 할 수 없다. 다만, 제1호	
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	
자·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	
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	
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.	
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	
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	
러하지 아니하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第53條(公務員 등의 立候補)	5
第1項第2號 내지 <u>第8號</u> 에 해	<u>제7호</u>
당하는 者(第4號 내지 第6號	
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	
포함한다)	
6. ~ 9. (생 략)	6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